



이혼소송과 재판출석

최은순/변호사

갑 순이는 소녀 시절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된 손님 갑돌이의 요구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 얼마있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고 혼인신고도 하고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된 갑돌이의 상습적이고도 지속적인 폭력이었다.

견디다 못한 갑순이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는 마침내 집을 나왔다. 도저히 갑순이의 뜻을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한 갑돌이는 협의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갑순이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출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돌이로부터 맞아 겁먹은 갑순이는 이후 재판에 출석을 할 수 없었다. 5년의 세월이 흘러 갑돌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갑순이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 갑순이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재판을 진행코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이다.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위 갑돌이의 행위는 '배우자에게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자신이 결혼생활 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사소송외에 갑순이가 갑돌이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갑순이가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으로 아직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고소가능하다.

그런데, 단순 폭행만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만약,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혼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판은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야만 한다. 문제는 갑순이가 갑돌이가 두려워 법원에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나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통 이혼사건과 같은 종류의 가사소송의 경우에 이러한 허가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 듯하다. 그래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보자 한다면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허가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갑순이로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친정오빠나 기타 친족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도 동시에 하면 된다. 이 때 법원에서 허가가 나면 허가된 자가 계속 재판에 관여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해야 한다.

변호사 보수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꺼려진다면 각 지방 검찰청에 소속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해 보거나 민간 여성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갑순이가 하루빨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